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17. 10. 19.>

석유수출입업 [ ] 등록신청서 [ ] 조건부 등록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14일

신청인	대표자 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)
	주소	
	상호	전화번호
	소재지	

신청 내용	수출입제품명		사업개시일	최초 통관예정일	
			년 월 일	년 월 일	
	저장 시설	총규모(기수)	소재지	착공예정일	완공예정일
		kℓ(기)			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9조제1항·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·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수출입업 [ ]등록 [ ]조건부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

첨부서류	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확인사항	수수료
1. 사업계획서 1부 2. 수입대행계약서 1부(석유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없음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 및 제출	→	접 수	→	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	→	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	→	등록증 작성	→	등록대장 기재	→	등록증 발급
신청인		한국 석유관리원		한국 석유관리원		시·도지사		시·도지사		한국 석유관리원		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